

2015회계연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15조 317억 2천 7백만원
- 징수결정액 : 17조 8,739억 1천 2백만원
- 실제수납액 : 16조 4,101억 9천만원
- 미수납액 : 1조 4,637억 2천 1백만원
- 결손처분 : 1,371억 1천만원
- 다음연도이월액 : 1조 3266억 1천 1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1.8%(전년도 90.5%)임.

〈201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15,031,727	17,873,912	16,410,190	1,463,721	91.8
지방세수입	13,787,530	17,063,214	15,624,421	1,438,793	91.6
지방세	13,787,530	17,063,214	15,624,421	1,438,793	91.6
보통세	12,198,781	14,194,313	13,895,179	299,134	97.9
취득세	3,470,920	4,549,603	4,527,595	22,008	99.5
주민세	404,019	419,066	409,768	9,299	97.8
재산세	1,914,911	2,048,159	2,005,034	43,125	97.9
자동차세	1,036,357	1,147,921	1,068,233	79,688	93.1
레저세	147,366	133,449	133,449	-	100.0
담배소비세	484,436	551,518	542,316	9,202	98.3
지방소비세	993,159	977,789	977,789	-	100.0
지방소득세	3,747,613	4,366,809	4,230,996	135,813	96.9
목적세	1,406,260	1,592,366	1,549,560	42,806	97.3
지역자원시설세	233,714	255,627	251,361	4,266	98.3
지방교육세	1,172,546	1,336,739	1,298,199	38,540	97.1
지나년도수입	182,489	1,276,535	179,681	1,096,854	14.1
지나년도수입	182,489	1,276,535	179,681	1,096,854	14.1

세외수입	625,245	191,745	166,817	24,928	87.0
경상적세외수입	28,357	31,677	31,591	86	99.7
재산임대수입	6,220	4,874	4,855	19	99.6
공유재산임대료	6,220	4,874	4,855	19	99.6
사용료수입	1,103	1,191	1,124	67	94.4
기타사용료	1,103	1,191	1,124	67	94.4
수수료수입	589	568	568	-	100.0
증지수입	589	568	568	-	100.0
이자수입	20,446	25,044	25,044	-	100.0
공공예금이자수입	19,678	21,769	21,769	-	100.0
기타이자수입	768	3,275	3,275	-	100.0
임시적세외수입	596,888	160,068	135,226	24,842	84.5
재산매각수입	548,868	64,340	61,247	3,092	95.2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48,868	64,340	61,247	3,092	95.2
과징금및과태료등	1,288	1,090	631	459	57.9
변상금및위약금	1,288	1,090	631	459	57.9
기타수입	41,965	54,035	53,929	106	99.8
불용품매각대	-	16	16	-	100.0
체납처분수입	1	2	1	1	66.5
시·도비반환금수입	22	20	20	-	100.0
그외수입	41,942	53,997	53,891	105	99.8
지난연도수입	4,767	40,603	19,419	21,184	47.8
지난연도수입	4,767	40,603	19,419	21,184	47.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8,952	618,952	618,952	-	100.0
보전수입등	618,952	618,952	618,952	-	100.0
잉여금	419,876	419,876	419,876	-	100.0
순세계잉여금	419,876	419,876	419,876	-	100.0
전년도이월금	199,076	199,076	199,076	-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199,076	199,076	199,076	-	10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2조 3,306억 6천 만 원
- 예산증감 : 58억 7천 9백 만 원
- 예산현액 : 2조 3,365억 3천 9백 만 원
- 지출액 : 2조 3,314억 5천 1백 만 원
- 이월액 : 7천 6백 만 원
- 불용액 : 50억 1천 2백 만 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0.2%(전년도 0.2%)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비고
5,012	682		4,330	

< 2015회계연도 재무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
총 예산	2,336,539	2,331,451	76	5,012	0.2
사업예산계	86,533	85,629	76	827	1.0
물품구매 관리 효율화	885	836		49	5.6
2014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198	184		14	7.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30	30		0	0.0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3	22		1	3.7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60	59		1	2.0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60	160		0	0.0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102	31		72	70.1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59,103	59,022	76	5	0.0
시유재산 관리위임	500	446		54	10.8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7,433	7,395		39	0.5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9	58		2	2.7
계약심사 업무추진	46	46		0	1.1
공공공사 사전계약심사제 운영	63	63		0	0.0
원가관리시스템 운영	95	90		5	5.5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	10		0	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18	96		22	18.4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334	334		0	0.0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62	709		154	17.8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15	111		4	3.1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0	178		12	6.2
모범납세자 지원	303	299		5	1.5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	30		0	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219	114		105	47.9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	5,000		0	0.0
세외수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개최	13	4		9	68.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459	1,423		36	2.5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47	36		11	23.4
세외수입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87	545		43	7.3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47	35		12	25.8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DB 암호화	407	325		82	20.2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521	2,449		72	2.9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5,232	5,232		0	0.0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13	13		0	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65	246		20	7.4
일 반 예 산 계	2,250,006	2,245,822		4,185	0.2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1,264,972	1,264,910		62	0.0
기 본 경 비	2,405	1,670		736	30.6
인 건 비	982,629	979,242		3,387	0.3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없음.

다. 예산 이체 : 총 3건, 3천 5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일 자	사 유
				감 액	증 액		
재무국 세무과	민·관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22	△22		'15.1.17	'15.1.1자 조 직 개 편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22		
재무국 세무과	민·관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	△9		'15.1.1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 공동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		
재무국 세무과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	△4		'15.1.1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 4건, 117억 1천 1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일 자	사 유
				감 액	증 액		
재무과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5	△6		'15.11.12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17		6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6,957	△1,459		'15.12.18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
		기타직보수	68,913		1,459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5,497	△10,234			
		보수	798,198		10,234		
세무과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사무관리비	874	△12		'15.11.25	전자고지 가입자 증가에 따른 문자 이용수수료 부족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공공운영비	44		12		

마. 예비비 사용 : 총 1건, 57억 9백만원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 통계목	지출액	지출사유
자 산 관리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 과오납금등	5,709	부당이득반환소송 판결금 지급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총 1건, 7천 6백만원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 통계목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자 산 관리과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 시설비	59,103	76	시유재산 시민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기간 변경 (사전절차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없음.

3. 기금결산 : 해당없음.

4. 채권현재액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채권종류	금 액	비 고
계		7,419	
자산관리과	미수금채권	7,289	재산매각(연부) 미수금
세 제 과	기타채권	130	소송비용채권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5년도말 재무국 소관 관리 공유재산

- 토지	521,917m ²	9,508억 3,746만원
- 건물	118,8949m ²	308억 3,167만원
총		9,816억 6,913만원

< 2015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백만원)

구분	2014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5년도말 보유현황	
		증 가	감 소		
합 계	1,186,735	11,252	216,318	981,669	
행정 재산	계	299,335	180	39,516	259,999
	공공용재산	11,591	91	2,693	8,989
	공용재산	0	89	0	89
	기업용재산	0	0	0	0
	보존재산	287,744	0	36,823	250,921
일반재산	887,400	11,072	176,802	721,670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5년도말 재무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49개,
현재액 1억 7천 7만원임.

< 2015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14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5년도말 보유현황
			증 가			감 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46	1	3	4	-	1	1	49
	금액	170	1	9	10	-	3	3	177
일반회계	수량	46	1	3	4	-	1	1	49
	금액	170	1	9	10	-	3	3	177

Ⅱ . 검토의견

1. 세입결산

가. 비과학적 세입예산운용

-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09.2%로 징수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분류별로 수납률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예산편성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22.7%(전년도 35.6%)에 그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 등 다른 세목과는 달리 정확하고 적정한 세수 추계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 세입 예산 추계 및 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음.

< 2015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 대비 수납률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수납률 (다/가)	미수납액
합 계	15,031,727	17,873,912	16,410,190	109.2	1,463,722
지 방 세	13,787,530	17,063,214	15,624,421	113.3	1,438,793
경상적 세외수입	28,357	31,677	31,591	111.4	86
임시적 세외수입	596,888	160,068	135,226	22.7	24,842
보 전 수 입 (순세계잉여금등)	618,952	618,952	618,952	100.0	0

- 특히, ‘지난연도 세외수입’의 경우는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징수결정 대비 징수율이 전년도보다는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50%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세입예산 대비 결산률도 평균 266%(2015년

407.4%, 2014년 211.0%, 2013년 270.5%, 2012년 196.9%, 2011년 244.5%)수준으로 과다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체납세입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율의 과대포장 등이 우려되는바, 향후 세입 예산 편성에 있어 지난연도 개별세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추계 및 세입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4%(2015년 11.74%, 2014년 8.8%, 2013년 6.3%, 2012년 16%, 2011년 9%)로 과소징수하고 있는 바, 예산 대비 결산율은 과대포장하고 실질 수납율은 저조하여 그 원인과 대비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망됨.

< 지난년도 세외수입 예산대비 결산율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징수율 (C/B)	예산 대비 결산률 (C/A)	징수결정액 대비수납율 (B/A)
2015	4,767	40,603	19,419	47.8%	407.4%	11.7%
2014	2,031	22,895	4,285	18.7%	211.0%	8.8%
2013	1,825	28,609	4,936	17.3%	270.5%	6.3%
2012	5,596	34,951	11,018	31.5%	196.9%	16.0%
2011	3,126	34,729	7,642	22.0%	244.5%	9.1%

- 한편,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중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과다하게 수납액이 발생한 ‘기타 이자수입’(결산률 426.4%)이나 ‘지난년도 세외 수입’(결산률 407.4%)의 경우도 세입예산 추계 자체가 부실했다고 할 것이나,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5,488억원) 대비 과다(결손 △4,836억원, 수납률 11.2%)한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재정 운용상 문제를 야기 했다고 할 것임.

○ 이렇게 예산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목 등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상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침해하여 서울시 전체 예산 및 재정운용상 중대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바, 당해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향후 세입예산의 추계 및 편성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의 규모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증액 편성 등 전례답습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세입관리부서의 각 세목별, 세수의 탄력성, 과세표준의 신장률, 경기변동 상황 등 세수 추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변수를 고려한 정확하고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집행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과다차이 세목 현황 >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비고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기타 이지수입	768	3,275	426.4	765	1,268	165.8	723	909	125.7	
공유재산 매각수입	548,868	61,247	11.2	411,376	51,293	12.5	123,962	89,476	72.2	
시도비 반환금수입	22	20	90.9	1,764	906	51.4	2,423	2,013	83.1	
지난년도 세외수입	4,767	19,419	407.4	2,031	4,285	211.0	1,825	4,937	270.5	
그외수입 (기타집수입)	41,942	53,891	128.5	128,016	136,151	106.4	478,928	581,553	121.4	
불용품 매각대금	0	16	-	0	11	-	0	2	-	미편성
순세계 잉여금	419,876	419,876	100.0	0	194,172	-	0	26	-	

나. 세입예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마련 요망

-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8.7% → 9.2% → 9.9% → 9.5% → 8.2%)은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매년 미수납 금액은 증가 추세(1조 1,340억 → 1조 2,757억 → 1조 3,865억 → 1조 4,448억 → 1조 4,637억)에 있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1조원이 넘고 있어 미수납 세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재무국 소관 세입의 연도별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률 (D/B)
2015	15,031,727	17,873,912	16,410,190	1,463,722	8.2%
2014	13,470,598	15,275,499	13,830,698	1,444,801	9.5%
2013	12,681,019	14,003,248	12,616,713	1,386,535	9.9%
2012	12,631,927	13,882,131	12,606,347	1,275,784	9.2%
2011	11,821,267	13,109,884	11,975,801	1,134,083	8.7%

- 특히, 재무국 소관 2015년도 지난년도 세입의 경우, 세목별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세의 경우는 평균징수율(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14.1%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징수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징수율(18.2%→16.6%→15.7%→13.8%→14.1%)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있어 서울시의 체납시세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음.

○ 각 세목별 최근 5년간 지난년도 시세의 징수율을 보면,

- 주민세의 경우는 7.0%(11년 6.5% → '12년 6.8% → '13년 5.9% → '14년 5.1% → '15년 7.0%),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6.3%(11년 10.4% → '12년 7.2% → '13년 8.2% → '14년 6.0% → '15년 6.3%)로 징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시설세의 경우도 15.3%(11년 32.5% → '12년 23.4% → '13년 16.7% → '14년 11.4% → '15년 15.3%)로 상당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 다소 징수실적이 양호했던 도시계획세의 경우에도 13.8%(11년 41.1% → '12년 27.5% → '13년 16.7% → '14년 15.1% → '15년 13.80%)로 최근에는 심각한 규모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음.

○ 이는 최근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방만한 체납징수 포상금제도의 운영과 자치구에 위임 징수하고 있는 세금 징수체계의 문제 및 만성화된 체납징수 조직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시세징수사무소의 설치와 같은 직접 징수제도의 도입 등 지난년도 시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서울시 세입 전반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재무국 소관 시세 지난년도 수입 세목별 징수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시세 소계	예산	182,489	178,481	176,213	186,482	173,051
	징수결정액	1,276,535	1,283,688	1,197,155	999,928	865,508
	수납액	179,681	177,187	187,983	165,811	157,882
	결손액	103,469	219,555	113,067	133,510	165,068
	다음연도이월액	993,385	886,946	896,105	700,607	542,558
	징수율	14.1%	13.8%	15.7%	16.6%	18.2%
취득세	징수결정액	76,566	84,097	88,076	74,837	74,809
	수납액	10,129	12,861	20,426	16,590	19,392
	결손액	3,434	21,558	7,747	4,552	10,613
	다음연도이월액	63,003	49,678	59,903	53,695	44,804
	징수율	13.2%	15.3%	23.2%	22.2%	25.9%
등록세 (구세)	징수결정액	19,248	27,469	30,506	28,139	23,582
	수납액	2,099	3,975	2,722	2,754	4,470
	결손액	2,285	7,587	8,436	4,639	3,741
	다음연도이월액	14,864	15,907	19,348	20,746	15,371
	징수율	10.9%	14.5%	8.9%	9.8%	19.0%
주민세	징수결정액	307,435	337,157	349,700	353,306	380,606
	수납액	21,612	17,055	20,563	23,854	24,609
	결손액	21,694	39,144	20,297	22,139	53,389
	다음연도이월액	264,129	280,958	308,840	307,313	302,608
	징수율	7.0%	5.1%	5.9%	6.8%	6.5%
재산세	징수결정액	101,402	93,887	72,193	52,974	27,277
	수납액	34,013	33,811	27,018	22,147	11,432
	결손액	13,095	6,830	2,659	5,168	3,998
	다음연도이월액	54,294	53,246	42,516	25,659	11,847
	징수율	33.5%	36.0%	37.4%	41.8%	41.9%
자동차세	징수결정액	122,299	121,459	116,769	108,962	104,829
	수납액	49,470	49,924	52,841	50,439	45,406
	결손액	12,613	6,444	3,606	8,073	17,315
	다음연도이월액	60,216	65,091	60,322	50,450	42,108
	징수율	33.5%	41.1%	45.3%	46.3%	43.3%
지방소득세	징수결정액	570,747	539,341	465,916	306,899	170,190
	수납액	35,721	32,121	38,024	22,032	17,738
	결손액	37,488	129,329	65,679	80,246	62,620
	다음연도이월액	497,538	377,891	362,213	204,621	89,832
	징수율	6.3%	6.0%	8.2%	7.2%	10.4%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지역자원시 설세	징수결정액	8,606	7,490	5,609	3,215	-
	수납액	2,851	2,530	1,959	1,319	-
	결손액	1,403	696	283	296	-
	다음연도이월액	4,352	4,264	3,367	1,600	-
	징수율	33.1%	33.8%	34.9%	41.0%	-
도시계획세	징수결정액	9,841	12,191	13,117	18,440	32,795
	수납액	1,362	1,836	2,290	5,065	13,480
	결손액	2,731	1,459	552	2,301	4,686
	다음연도이월액	5,748	8,896	10,275	11,074	14,629
	징수율	13.8%	15.1%	17.5%	27.5%	41.1%
공동시설세	징수결정액	1,951	2,362	2,651	3,929	6,461
	수납액	306	270	443	921	2,098
	결손액	448	286	162	734	1,279
	다음연도이월액	1,197	1,806	2,046	2,274	3,084
	징수율	15.7%	11.4%	16.7%	23.4%	32.5%
지역개발세	징수결정액	17	22	22	25	36
	수납액	1	5	1	4	7
	결손액	2	1	3	-	8
	다음연도이월액	14	16	18	21	21
	징수율	5.9%	22.7%	4.5%	16.0%	19.4%
지방교육세	징수결정액	58,423	58,211	52,597	49,201	44,922
	수납액	22,117	22,798	21,695	20,687	19,249
	결손액	8,276	6,220	3,644	5,362	7,420
	다음연도이월액	28,030	29,193	27,258	23,152	18,253
	징수율	37.9%	39.2%	41.2%	42.0%	42.8%

다. 적극적인 체납세입 징수 노력 요망(결손처분 취소 체납처분)

- 결손처분 했던 세입금을 다시 징수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으로 처분한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여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과거 수준(2011년도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바,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철저한 권리분석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건 수	7,003	5,690	7,818	4,986	14,296	10,457	21,574
결손처분을 취소한 체납액	11,695	11,820	6,642	6,008	19,988	21,856	64,653

○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비율이 전년도 보다 낮은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세수확보를 위해 결손처분 후에도 해당 결손처분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체납세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최근 5년간 급격하게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 및 1조원 이상 그 규모가 줄지 않고 있는 '다음연도 이월'의 경우도 각 세목별, 사유별, 사안별 상세내용에 대한 연구 등 각종 세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망된다 하겠음.

< 연도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결손률 (%)	결손처분사유별					
				소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타
2015	17,873,912	1,463,722	9.4	137,110	62,510	1,650	27,868	9,917	35,165
2014	15,275,499	1,444,801	18.3	263,859	119,877	2,762	21,025	54,075	66,120
2013	14,003,249	1,386,535	12.7	176,312	61,363	2,707	15,285	65,467	31,509
2012	13,882,131	1,275,785	15.0	190,938	80,146	3,119	13,370	57,463	36,840
2011	13,109,884	1,134,083	20.7	235,319	114,098	5,417	13,119	59,171	43,514

< 연도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소 계	징수유예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소송계류 채산입류	기타
2015	17,873,912	1,463,722	1,326,611	9,871	47,924	344,212	231,838	646,117	46,649
2014	15,275,499	1,444,801	1,180,942	5,188	40,249	247,055	228,555	595,903	63,991
2013	14,003,249	1,386,535	1,210,224	6,622	51,220	243,699	251,332	563,816	93,535
2012	13,882,131	1,275,785	1,084,847	11,975	61,173	214,906	241,575	472,684	82,535
2011	13,109,884	1,134,083	898,765	2,168	51,689	224,124	184,401	355,709	80,574

2. 세출결산

가. 과다한 불용예산의 문제

- 재무국 소관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2,253,150백만원) 대비 불용률은 0.2%(4,534백만원)로 전년도 0.6%에 비해 낮아졌으며, 서울시 전체 불용률(2.9%)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불용율이 20%를 초과한 다음 사업들의 경우는 실소요 예산에 대한 분석을 거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천 원)	지출액 (천 원)	불용액 (천 원)	불용률 (%)	불용사유
물품구매 관리 효율화	공공운영비	840	629	211	25.17	집행잔액(자재창고 공공요금)
2014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기타보상금	12,150	8,100	4,050	33.33	조례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 출장여비 지급일수 감소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8,910	30,533	18,377	37.57	공공구매제도 개선 효과 분석용역이 서울연구원 연구과제로 채택되어 비예 산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당예산 불용
	공공운영비	53,232	-	53,232	100.0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준 공기한 연장에 따라 운영관리비 불용
지방세심의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8,100	48,600	19,500	28.63	집행잔액
모범납세자 지원	사무관리비	500	100	400	80.0	집행잔액
시세 세원발굴 지원	기타보상금	10,000	-	10,000	100.0	시민제보 실적 저조로 집행액 없음
	포상금	209,000	114,029	94,971	45.44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조례가 '12.9.28. 개정되어 시행 초기단계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2년 이 상이면서 불복청구기간이 종료되어야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집행률이 낮지만, 향후 포상 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부과건수가 늘어 남에 따라 집행액이 증가될 전망이다
세외수입 아이다어 발굴 경진대회 개최	사무관리비	2,980	1,155	1,825	61.25	우수제안 부족으로 최우수 및 우수 상 없이 장려상만 시상하였고, 제안 부족으로 시상식도 미개최 ※ 2016년도 예산 미편성
	기타보상금	5,000	1,000	4,000	80.0	

-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 업무추진”사업의 ‘공공운영비’는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준공기한 연장을 이유로 운영관리비가 전액불용 처리되었고, “시세세원 발굴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의 경우도 시민 제보 실적 저조를 이유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 ‘세외수입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 개최’ 사업은 세외수입 증대, 예산절감,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광고 수입증대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여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과 달리 우수제안 부족 등을 이유로(사무관리비(불용률 61.2%), 기타보상금(불용률 80%) 등)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음.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의 경우 과다한 집행잔액 사유로 예산집행 잔액 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 불용액의 발생은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산출근거나, 수요예측의 부실 및 세부집행 계획이 없는 포괄적 집행계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불용예산은 편성된 예산의 사장으로 인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바, 향후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실소요 예산 편성 등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차년도 이월 사유의 타당성 검토 관련

- 재무국의 이월사업비는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사업의 ‘시설비’ 1건에 7천 6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음.

< 사고이월 관련 사업 예산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과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세부사업	통계목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시설비	59,103,000	59,097,662	59,021,614	76,048	5,337

-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사업의 ‘시설비’는 시유재산 시민이용활성화 지원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기간 변경에 따라 7천 6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다고 하고 있음.
- 사고이월은 사업 집행을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 또는 발주)를 한 후 공기(工期)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이나,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명시 이월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것임.
- 따라서 재무국은 모든 사업의 집행에 있어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예산부서 및 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 예산의 전문성과 효율성,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예산의 변경사용후 불용액 발생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의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재무국은 2015회계연도에 총 4건의 예산을 변경사용 하였음.
 -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6백만원)을 변경사용하였으며, 전자고지 가입자 증가에 따른 문자 이용수수료 부족분 확보를 위해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사업 중 ‘공공운영비’ 예산을 증액 변경사용(1천2백만원) 하였음.
 -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연말 연가 보상비 등 지급대상 증가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에 14억5천9백만원 과, ‘보수’에 102억 3천 4백만원을 각각 변경사용 하였음.

< 예산 변경사용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유
			감액	증액			
계약정보관리 및 공공구매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5	△6		31	18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17		6	22	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6,957	△1,459				현원 증에 따른 인건비 부족
	기타직 보수	68,913		1,459	70,139	23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5,497	△10,234		34,491	772	
	보수	798,198		10,234	806,818	1,614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사무관리비	874	△12		709	154	전자고지 가입자증에 따른 문자 이용수수료 부족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공공운영비	44		12	52	4	

- 그러나, “인력운영비”의 ‘기타직 보수’는 14억5천9백만원을 변경사용 했음에도 2억3천3백만원을 불용시켰고, ‘보수’는 102억 3천4백만원을 변경사용 했음에도 18억4천7백만원을 불용시켰으며, “상시세금납부체제 구축”사업의 ‘공공운영비’는 1천2백만원을 변경사용 했으나 4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재차 변경사용할 수 없으며, 실소요예산에 한하여 변경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향후 상기사업과 같이 변경사용 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변경 전 치밀한 사전 조사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위한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